## 공직선거법위반·개인정보보호법위반

[청주지방법원 2015. 1. 22. 2014고합259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유선(기소, 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광평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(원심: 피고인)을 판시 제1의 나.죄 및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,000,000원에, 판시 제1의 가.죄 및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2를 판시 제1의 나.죄에 대하여 벌금 900,000원에, 판시 제1의 가.죄 및 판시 제3,4죄에 대하여 벌금 2,000,000원에, 피고인 3을 판시 제1의 나.죄에 대하여 벌금 900,000원에, 판시 제1의 가.죄에 대하여 벌금 1,2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【이유】

[이유]

]

[이유]

1